

제154회 거창군의회의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7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8 ~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08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08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08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51
2008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1
2008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연월일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원 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중 전상공상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을 유지 및 명예를 높여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함(안 제1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
→ 유공자

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 삭제함

다. 참전명예수당을 증액 지원함(안 제4조제1호)

- 월 1만원 → 월 3만원 내

라.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함(안 제4조제1호)

- 의거, ~의 규정에 의한 → 따라, 에 따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366백만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9. 25.~ 10.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를 “유공자”로 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1만원”을 “월 3만원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창군내 관광지”를 “군 관광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u>참전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u>」(이하 “<u>법률</u>”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또는 월 남전쟁에 참전한 <u>유공자(이하 “참전유 공자”라 한다)</u>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 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참전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u>」에 따라 ----- ----- ----- <u>유공자</u>----- ----- ----- ----- -----.</p>
<p>제2조(정의) “<u>참전유공자</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 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 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1. ~ 5. (생략)</p>	<p>제2조(정의)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u>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u>-----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대상자) <u>지원대상자는 참전유 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거창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단,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u></p> <p>1. <u>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u></p> <p>2. 「<u>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p>	<p>제3조(지원대상자) <u>지원대상자는 참전유 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 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 보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u>월 1만원</u> 지급 2. (생략) 3. <u>거창군내 관광지</u>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4. (생략)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월 3만원 내</u> 지급 2. (현행과 같음) 3. <u>군 관광지</u> ----- ----- 4. (현행과 같음)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u>의거</u>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당은 매분기 익월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u>의거</u>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다만,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에 대하여는 첨부 생략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 <u>따라</u> ----- ----- -----.</p> <p>② ----- ----- <u>따라</u> ----- ----- -----.</p> <p>③ ----- ----- <u>에 따른</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략)</p> <p>② 군수는 신청받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p>	<p>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에 따른</u> ----- ----- -----.</p>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일자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주민전체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 (안 제1조, 제2조)
- 나.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신설 (안 제5조제3항)
 -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편향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함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함
(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47조, 제51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 [경남도 행정과-5769호('08.9.10)]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10. 22. ~ 11.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거창군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를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맡은바”를 “맡은 바”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근무상의”를 “근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을 “내”로, “발생할 때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잔무처리상”을 “잔무처리를 위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범위 안”을 “범위 내”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무수행상”을 “공무수행을 위해”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서”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법령에 의한”을 “법령에 따른”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하여는”을 “대하여는”으로, “일일”을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년”을 “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공무수행상”을 “공무수행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연가를 가름”을 “연가에 같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발생한 경우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일할”을 “월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의하여”를 “따라”로, “소숫점”을 “소수점”으로,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범위안”을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내”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병역법」 기타”를 “「병역법」 또는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별표 3””을 “별표 3”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재해구호허가”를 “재해구호휴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휴가 기간중”을 “휴가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 지방공무원</u>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거창군 지방공무원</u> ----- ----- -----.</p>
<p>제2조(복무선서) ① <u>공무원</u>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u>별표1</u>”의 선서문에 <u>의한다</u>.</p>	<p>제2조(복무선서) ① <u>거창군 지방공무원</u>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u>따라</u> ----- -----. ② ----- <u>별표 1</u>----- <u>따른다</u>.</p>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u>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완수) ----- ----- ----- <u>성실로써 맡은 바</u> -----.</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u>각호</u>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u>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 <u>법령에 의하여</u>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 3. (생략) 4. <u>기타</u>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제3조의2(비밀엄수) ----- <u>각 호</u>의 어느 하나----- ----- <u>사용해</u>서는 안 된다. 1. --- <u>따라</u> ----- 2.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 -----</p>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생략) ② 공무원은 “<u>별표2</u>”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표 2</u>----- -----.</p>

현행	개정안
<p>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u>친절·공정</u>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5조(친절·공정) ① ----- ----- ----- <u>친절</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u></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u>이외</u>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u>기타</u>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u>근무상</u>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u>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u>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 <u>외</u>----- -----.</p> <p>② ----- ----- <u>그 밖에</u> ----- ----- <u>근무를 위하여</u> ----- -----.</p> <p>③ <u>당직 및 비상근무자</u>----- ----- -----.</p> <p>④ ----- <u>범위 안</u>-----.</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u>당해</u>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u>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u></p> <p>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u>안</u>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u>발생할 때에는</u>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 ----- <u>해당</u> ----- ----- ----- <u>소비해서는 안 된다.</u></p> <p>② ----- <u>내</u> ----- <u>발생하면</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u>의하여</u>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u>당해</u>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겸임근무) ① ----- ----- <u>따라</u> ----- ----- -----.</p> <p>② ----- ----- ----- <u>해당</u> ----- ----- -----.</p>
<p>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u>의하여</u>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제10조(파견근무) ① ----- ----- <u>따라</u> ----- ----- -----.</p>

현행	개정안
<p>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u>당해</u>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u>기타</u>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 ----- ----- <u>해당</u> ----- -----.</p> <p>③ ----- ----- ----- ----- ----- ----- <u>그 밖의</u> ----- -----.</p>
<p>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u>잔무</u>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 <u>잔무</u> <u>처리를</u> 위해 ----- -----.</p>
<p>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u>근무중</u>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u>공무원증규칙</u>」(총리령)을 준용한다.</p>	<p>제12조(복장 등) ① ----- <u>근무 중</u> ----- -----.</p> <p>② ----- ----- 「<u>공무원증규칙</u>」(행정안전부령)- -----.</p>

현행	개정안
<p>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일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u>공무수행상</u>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④ ----- ----- 있으면 <u>공무수행을 위해</u> ----- -----.</p>
<p>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u>당해</u>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u>아니할</u>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 ----- 따른 ----- <u>해당</u> ----- <u>않을</u> ----- ----- <u>연가에 같음</u>----- ----- -----.</p>
<p>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u>당해연도</u>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u>당해연도</u>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⑥ ----- <u>해당</u>----- ----- <u>발생하면</u> ----- ----- ----- <u>해당</u>----- -----.</p>
<p>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생략)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u>당해연도</u>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u>아니하며</u>,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u>당해년도</u> 연가일수×(12월-<u>당해년도</u> 휴직기간(월))/12월</p>	<p>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u>해당</u>----- ----- <u>일할</u> ----- ----- ----- <u>않으며</u>, ----- <u>따라</u> ----- <u>소수점</u> -- ----- -----. ○ ----- = <u>해당년도</u> ----- ---(--- <u>해당년도</u> -----)</p>

현행	개정안
<p>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1조(병가)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u> ----- <u>범위 내</u>----- ----- ----- ----- ----- <u>따라</u> ----- ----- ----- <u>않는다.</u> 1. ~ 2. (현행과 같음) ② ----- ----- ----- <u>범위 내</u>----- 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p> <p>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p>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p> <p>4. (생략)</p> <p>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p>	<p>제22조(공가)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u> ----- ----- ----- 1. 「<u>병역법</u>」 또는 그 밖의 ----- <u>따른</u> ----- ----- 2. ----- <u>그 밖의</u> ----- 3. ----- <u>따라</u> ----- ----- 4. (현행과 같음) 5. ----- ----- <u>따른</u> -----</p>

현행	개정안
<p>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p> <p>7. (생략)</p> <p>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p> <p>9. (생략)</p>	<p>6. ----- ----- 따른 ----- -----</p> <p>7. (현행과 같음)</p> <p>8. ----- 그 밖의 ---- -----</p> <p>9.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⑥ ~ ⑨ (생략)</p> <p>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 ----- ----- 그 밖의 ----- --- 별표 3----- 따른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 ----- -----.</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⑩ ----- ----- ----- 재해구호휴가----- -----.</p>
<p>제24조(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 않는다. ----- 따른 ----- 그렇지 않다.</p>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일자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2009년도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와 감면 추정 제외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목을 확대하며,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고, 분리과세 대상인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도세 감면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가 따로 운용됨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감면 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를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안 제11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50% 감면

다.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 구체화 (안 제12조의2제2항)

-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수정

라.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안 제2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비영리사업자가 제132조 제5항제14호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 조례 제28조제1항 삭제

마.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명확화

(안 제7조제3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5조의4제3호, 제17조, 제19조, 제21조)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안 제7조제3호)
-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삭제 (안 제10조제4호)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 임대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정할 경우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용조문 수정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안 제12조)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안 제15조의4제3호)
- 주거용 부동산 → 주택 (안 제17조)
→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9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단업무
-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안 제21조)
→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의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 「농어촌정비법」 제27조, 제31조, 부칙 제3항(경과조치)
-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주택법」 제2조제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향교재산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10. 8. ~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및 제3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의4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19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 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p>	<p>1.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p> <p>2. -----</p> <p>----- <u>재산세 및 도시계획세</u> -----</p> <p>② -----</p> <p>----- . --,</p>

현 행	개 정 안
<p>공동 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면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u>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p>	<p>-----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p> <p>-----</p> <p>-----</p> <p>-----</p> <p>1.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p> <p>-----</p> <p>-----</p> <p>-----</p> <p>-----</p> <p>-----</p> <p>-----</p> <p>2. -----</p> <p>-----</p> <p>-----</p> <p>-----</p> <p>----- <u>재산세 및 도시계획세</u>-----</p> <p>-----</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자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신 설></p>	<p>제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p> <p>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p> <p>1. ~ 2. (생 략)</p>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 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5조의4(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주택-----)----- ----- ----- 1. ~ 2. (현행과 같음)</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 ----- ----- ----- -----</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 ----- -----</p>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p> <p>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p> <p>「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연월일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가. 출산이 집중된 20~30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군내 젊은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현상을 개선하여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취득 지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
- 다. 경남도 자체사업인 무상보육료 지원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 또는 신설함(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1호)
 - 현행 :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 개정 : 아이를 출산한 자
 - 국적취득자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신설에 따른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제9호)
 -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출산장려 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엽산제 지원 신설 : 5개월분(안 제5조제3호)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안 제5조제4호)
 - 현행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개정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
- 라. 경남도 자체사업인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우리군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관련항 삭제(안 제11조제3항)
- 마. 국적취득자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및 업무관장 부서 신설(안 제20조제9호)
 -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

바.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 또는 신설함

-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신설 : 별지 제4호서식(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

**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띄어쓰기**

- 정의는 → 뜻은 / ~(이)라 함은 → ~(이)란 / 매→장 /
인 → 명 / ~의거 → ~따라
- 만V(5)60세, 각V호, 셋째V이상, 되어V있고, 군V외, 범위V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 「국적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 「한부모가족지원법」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
- 2008년도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계획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본예산 반영(245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10. 9. ~ 10.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아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제3호 및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주소를”을 “주민등록을”로, “만60세”를 “만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엽산제 : 5개월분

4.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제5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산제는 가임여성 등록시 5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제5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 후 수령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전출시”를 “전출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셋째이상”을 “셋째 이상”으로, “되어있고”를 “되어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만5세”를 각각 “만 5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셋째이상”을 “셋째 이상”으로, “되어있고”를 “되어 있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외”를 “군 외”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6호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8호 중 “매”를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출생순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	-------------------------

별지 제2호서식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지원종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지원종별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	--------------------------------------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2.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라 함은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p> <p>3. “협약업체”라 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p> <p>4. ~ 5. (생략)</p> <p>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p> <p>7. “귀농세대”라 함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60세 이하의 세대주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 뜻은 -----.</p> <p>1. ----- ----- 아이 ----- -----.</p> <p>2.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란 --- ----- -----.</p> <p>3. “협약업체”란 -----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 2명 -----.</p> <p>7. “귀농세대”란 ----- 주민등록을 ----- ----- 만 60세 -----.</p>

현 행	개 정 안
<p>8. (생 략) <신 설></p> <p>9. (생 략)</p>	<p>8. (현행과 같음)</p> <p>9.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생 략)</p> <p>1. ~ 2. (생 략) <신 설></p> <p>3. 출산장려금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p> <p>4. (생 략)</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엽산제 : 5개월분</u></p> <p>4.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20만원(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u>제5조제1호 및 제2호</u>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 <단서 신설></p> <p>② <u>제5조제3호 및 제4호</u>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 하여도 가능)</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u> ----- ----- ----- ----- ----- ----- ----- ----- ----- -----</p> <p>.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 <u>제5조제4호 및 제5호</u> ----- ----- ----- ----- ----- -----</p>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원방법) (생략)</p> <p>1. ~ 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4. (생략)</p>	<p>제7조(지원방법)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엽산제는 가임여성 등록시 5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u>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후 수령한다.</u></p> <p>② <u>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u></p> <p>1. ~ 3. (생략)</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 후 수령한다.</u></p> <p>② <u>제5조제4호 및 제5호</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p> <p>① ~ ② (생략)</p> <p>③ <u>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생략)</p> <p>2. <u>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타 시·군·구로 <u>전출시</u>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거창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거창군수입으로 귀속된다.</u></p>	<p>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각 호</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전출시</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u>셋째이상</u> 자녀 중 <u>만5세</u>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u>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u>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u>만5세</u>까지 지급한다. 다만, <u>만5세</u>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 까지만 지급한다.</p> <p>③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인 <u>만4세 셋째아 보육료</u> 지원대상자에게는 <u>중복지원 할 수 없다.</u></p>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 ----- <u>셋째 이상</u> ----- <u>만 5세</u> ----- ----- ----- ----- <u>되어 있고</u> -----.</p> <p>② ----- ----- <u>만 5세</u>----- <u>만 5세</u> ----- -----.</p> <p>③ <삭 제></p>
<p>제16조(지원대상 기준) ① <u>고등학교 학자금</u> 지원대상은 <u>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u>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u>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u>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u>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u> <u>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u>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p> <p>② ~ ③ (생략)</p>	<p>제16조(지원대상 기준) ① ----- ----- <u>셋째 이상</u> ----- ----- ----- <u>되어 있고</u> ----- ----- <u>군 외</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u>각호</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u>거창군홈페이지</u>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 ----- <u>각 호</u>----- ----- ----- -----.</p>

현 행	개 정 안
<p>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u>범위내</u>의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p> <p>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u>범위내</u>의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p> <p>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u>범위내</u>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p> <p>4. (생 략)</p> <p>5. 전입세대에 대한 50리터 20<u>매</u>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산림환경과)</p> <p>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u>범위내</u>의 장학금 지원(1010추진단) (개정 2008.7.24. 조례 제1897호 부칙)</p> <p>7. (생 략)</p> <p>8. 전입세대에 대한 5<u>매</u>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교육문화센터)</p> <p><u><신 설></u></p> <p>9. (생 략)</p>	<p>1. ----- <u>범위 내</u> -----</p> <p>2. ----- <u>범위 내</u> -----</p> <p>3. ----- <u>범위 내</u> -----</p> <p>4. (현행과 같음)</p> <p>5. -----<u>장</u> ---- -----</p> <p>6. ----- <u>범위 내</u> -----</p> <p>7. (현행과 같음)</p> <p>8. ----- <u>장</u> ----- -----</p> <p>9. <u>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1010추진단)</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p> <p>① (생 략)</p> <p>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기관단체·각급학교·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인구증가시책에 관심이 있는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④ ~ ⑧ (생 략)</p>	<p>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명</u> -----</p> <p>③ ----- <u>명</u>, ----- <u>명</u>, ---- <u>명</u>-----</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p> <table border="1" data-bbox="188 555 767 645"> <tr> <td>출생순위</td> <td>① 둘째아이 ② 셋째아이 ③ 넷째아이 이상</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지원을 신청 합니다.</p>	출생순위	① 둘째아이 ② 셋째아이 ③ 넷째아이 이상	<p>[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p> <table border="1" data-bbox="826 555 1406 645"> <tr> <td>출생순위</td> <td>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신청 합니다.</p>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출생순위	① 둘째아이 ② 셋째아이 ③ 넷째아이 이상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p>[별지 제2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2호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별지 제3호서식]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p> <table border="1" data-bbox="188 1451 767 1541"> <tr> <td>지원종별</td> <td>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학자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지원종별	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p>[별지 제3호서식]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p> <table border="1" data-bbox="826 1451 1406 1541"> <tr> <td>지원종별</td> <td>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td> </tr> </table>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또는 제20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학자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지원종별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지원종별	셋째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지원종별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전입세대 학자금()				
<p><신 설></p>	<p>[별지 제4호서식]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 (별 첨)</p>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

(접수번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보호자)성명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이상	
주소 (전화번호)	☎ HP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 · 면 장 확 인

20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연월일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동주택 보조금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단지 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마.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나머지 위원은 군수가 위촉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간사 1명은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로 함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수당, 준용,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3조, 제55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9조
-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8조, 제63조
- 「임대주택법」 제2조, 제28조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본예산 반영(200,28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8. 10. 18. ~ 11. 6.) 결과 : 별첨(반영3건, 미반영2건)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차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대우아파트 관리소장 · 주공4차아파트 관리소장(장대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5조 제3항(지원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대한 입주자 3분의2 동의 ⇒ 과반수동의로 수정 요청 - 사유 :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특성상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반동의로 사업계획을 인정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공4차아파트 관리소장(장대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내의 위원 ⇒ 10명내의 위원으로 수정 요청 - 사유 : 관위주의 인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의견 반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7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으로 수정 요청 - 사유 :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연임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4조(지원대상및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등 전기료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지원 가능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4조(지원대상및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 자기자본부담비율의 구체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미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 라.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시설 보수(도로 안에 매설된 하수도시설)
3. 어린이 놀이터 보수

4. 경로당의 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분야별 보수대상 시설물 적용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예정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사업계획 및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유무

5.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방법 등의 결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건축·토목·전기·재난관리분야 전문가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업무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분야별 보수대상 시설물 적용 및 지원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공통기준]

1. 각종 시설물의 신설, 수목의 식재 및 물품의 신규구입은 제외한다.
2.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지원은 관련법규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받고 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단지별 지원총액은 세대수, 사용검사연도 및 기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분야별 기준]

1. 주 도로, 가로등(제4조제1항제1호)

- 가. “주 도로”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하며, 단지별 주 도로의 구분 및 보수대상 여부는 건설과에서 판단한다.
- 나. 도로의 보수는 부분보수를 말하고, 부분보수 시 가급적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한다.
- 다. 가로등 보수대상은 단지 안 도로상에 설치된 가로등을 말한다.

2. 하수도(제4조제1항제2호)

- 가. 하수도시설 보수는 부분보수를 말한다.
- 나.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안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정한다.

3. 어린이놀이터(제4조제1항제3호)

어린이놀이터는 노후도를 점검하여 보수 및 교체를 하되, 안전과 위생상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4. 경로당(제4조제1항제4호)

경로당의 보수는 경로당 안 시설물의 부분보수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 신청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 공 일)	
2. 신청내용				
사 업 목 적 및 내 용				
사업예정기간				
총 사 업 비				
보조신청금액				
자 기 자 본 부 담 액				
그 밖에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관리주체)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확 인(입주자대표)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귀하</p>				
<p>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p>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연월일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최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서 위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거창군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함(안 제2조)

나.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4조, 제15조)

다.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성립, 조정의 거부·중지·종결과 그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29조, 제42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67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본예산 반영(1,05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8. 10. 18. ~ 11. 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거창군 소속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 신청인 및 분쟁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조정내용 및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당사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전체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이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 성립 등)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관계기관·단체,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출석대상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안 통지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 내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해당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이 종결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p> <p>(분쟁 각 당사자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 석 대상자	성 명		자 격	
	주 소			
출 석 요 청 일 자	년 월 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p> <p>(출석대상자 귀하)</p>				
<p>※ 주의사항</p> <p>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청서, 신분증, 도장 및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p> <p>(분쟁 각 당사자 귀하)</p>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 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이유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p> <p>(분쟁 각 당사자 귀하)</p>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조정대상	단 지 명				
	위 치				
	신 청 인				
	피신청인				
신청내용					
조정결과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p>					
직 위	성 명	서명또는날인	직 위	성 명	서명또는날인
위원장			위원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연월일	2008. 11.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국군기무부대 및 국가정보원 관계자 추가

나. 약칭을 삭제하여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통합방위법」
-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 기타 → 그 밖에
(안 제2조제5호, 제4조제3항제6호, 제4조제7항, 제5조제2호라목)
-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른(따라) (안 제1조, 제5조)
- 각호 → 각 호 (안 제2조,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
- 각목 → 각 목 (안 제5조제1호)
- 인 → 명 (안 제3조제1항)
- 이내 → 내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 취약지역내의 → 취약지역 (안 제5조제1호다목)
- 소속하에(협조하에) → 소속 하에(협조 하에)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10. 9. ~ 10.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통합방위 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의 제목을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협의회”를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 이내”를 “15명 내”로,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3.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6. 거창경찰서장
7. 경상남도거창교육청교육장
8. 거창소방서장
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의 제목 중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 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 “읍면방위지원본부장”을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7인 이내”를 “7명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0명 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 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제5조 본문 중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통합방위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취약지역내의”를 “취약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 중 “협조하에”를 “협조 하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의료활동 및 봉사활동”을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이외”를 “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및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 ----- ----- ----- -----.</p>
<p>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p>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각 호-----.</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 1명 ----- 15명 내-----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p>

현 행	개 정 안
<p>② 협의회위원은 다음 <u>각호</u>에 정한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창군 의회의장</u> 2. <u>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장</u> 3. <u>거창경찰서장</u> 4. <u>육군 제8962부대6대대장</u> 5. <u>거창군교육장</u> 6. <u>거창소방서장</u> 7. <u>기타 협의회위원장이 위촉하는자</u> 	<p>② ----- <u>각 호</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창군의회 의장</u> 2. <u>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u> 3. <u>국군기무부대 관계자</u> 4. <u>국가정보원 관계자</u> 5. <u>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u> 6. <u>거창경찰서장</u> 7. <u>경상남도거창교육청교육장</u> 8. <u>거창소방서장</u> 9. <u>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u>
<p>③ 협의회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u>각호</u>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③ ----- --- <u>각 호</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제4조(<u>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군수, 읍·면장 소속하에</u>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u>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u> 부군수가 되고, <u>읍면방위지원본부장은</u> 읍·면장이 된다. 	<p>제4조(<u>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u>소속 하에</u>-----. ② <u>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u>----- --- <u>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u>--- -----.

현 행	개 정 안
<p>③ <u>통합방위지원본부</u>는 다음 <u>각호</u>의 사무를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6. <u>기타</u>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p> <p>④ (생략)</p> <p>⑤ <u>종합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u></p> <p>⑥ <u>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u></p> <p>⑦ <u>기타</u> 군, 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p>	<p>③ <u>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u>----- <u>각 호</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0명 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u></p> <p>⑥ -----</p> <p>-----</p> <p>-----</p> <p>-----</p> <p>-----</p> <p>-----</p> <p>----- <u>7명 내</u>-----</p> <p>-----.</p> <p>⑦ <u>그 밖에</u> -----</p> <p>-----</p> <p>-----.</p>
<p>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u>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u>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u>각호</u>와 같다.</p>	<p>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u>통합방위법</u>」 제17조제5항에 따른 -----</p> <p>----- <u>각 호</u>-----.</p>

현행	개정안
<p>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u>각목</u>의 사항</p> <p>가. ~ 나. (생략)</p> <p>다. <u>취약지역내의 주민신고망의 조직</u></p> <p>라. 관계기관의 <u>협조하에</u>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p> <p>마. (생략)</p> <p>바. <u>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및 봉사활동</u></p> <p>2. (생략)</p> <p>가. ~ 다. (생략)</p> <p>라. <u>기타 장애물로 활동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u></p> <p>제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u>이외에</u>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p>	<p>1. ----- <u>각 목</u>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취약지역</u> -----</p> <p>라. ----- <u>협조 하에</u> ----- -----</p> <p>마. (현행과 같음)</p> <p>바. ----- <u>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u></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그 밖에</u> ----- -----</p> <p>제6조(운영규칙) ----- <u>외</u>----- ----- -----.</p>